

## 環境保全을 위한 國際機構

盧 明 濤\*

### 〈目 次〉

- |             |             |
|-------------|-------------|
| I. 序 論      | III. 地域的 機構 |
| II. 汎世界的 機構 | 1. 유립機構     |
| 1. UN機構     | 2. 非유립機構    |
| 2. 非政府間 機構  | IV. 結 論     |

### I. 序 論

1990年代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두가지 최대과제는 經濟開發과 이에 수반되는 環境汚染을 방지·경감시켜 인류의 環境을 保全하는 것이다. UN을 위시한 많은 국제기구들이 이 두가지 과제를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중요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992년 6월 3일부터 12일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UN環境開發會議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UNCED)가 개최된 것은 地球環境 保全을 위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였다. 이 회의는 이른바 리우宣言과 議題 21(Agenda 21)을 채택하였고 우리나라를 위시한 많은 참가국이 生物多樣性 保全協約과 氣候變化協約에 서명하였다. 인류가 처음으로 환경문제를 논의했던 1972년 Stockholm人間環境會議 이후 20년만에 개최된 이 리우會議은 “環境의으로 健全하며 環境이 지탱가능한 開發(Environmentally Sound and Su-

\* 韓國外國語大學校 教授.

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에 입각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 지구의 환경용량에 맞는 새로운 지구자원의 개발체제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리우會議가 채택한 리우宣言과 議題21은 法的 拘束力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단지 宣言의 인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불과하나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서 앞으로 관습국제법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리우環境開發會議는 비록 각국의 利害相衝,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대립으로 당초 地球環境保全을 위해 기대했던 실효적인 해결방안은 마련하지 못하였으나 環境問題가 국가차원을 넘어서 온 인류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공동과제임을 보여 주었다. 地球溫暖化, 오존層의 파괴, 生物資源의 滅種危機, 熱帶林의 파괴등 地球生態系의 파괴는 그 문제해결을 위하여 모든 국가의 공동 노력과 국가간의 상호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기구에 의한 環境問題 解決努力이 高揚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UN體制內와 體制外에서 많은 政府間機構 또는 非政府間機構가 環境保全에 노력하고 있다. 本論文의 목적은 環境保全問題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國際機構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그들의 성과를 평가하려는 데 있다. 먼저 UN과 같은 汎世界的 機構들을 소개하고 이어서 EC와 OECD등과 같은 地域的 機構들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 II. 汎世界的 機構

인류의 環境을 보전하고 地球生態系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國家的 次元의 처방만으로는 그 목적의 달성이 어렵다.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과 달리 해양오염이나 대기오염은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까지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國家間的의 협력과 國際法上 처방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環境保全에 있어서 國際機構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末부터 많은 國際機構들이 環境保全問題에 종사하기 시작하였고 1972년 Stockholm人間環境會議에 대표들을 파견하였다. 1992년 UN環境開發會議에도

많은 政府間 및 非政府間 機構들이 대표단을 파견하여 環境問題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Stockholm宣言 第25原則이 環境保全에 있어 국제기구가 效率的이고 動的인 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各國이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地球生態系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국제기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아직도 地球環境, 環境汚染實態, 汚染被害의 救濟方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과거 20년간 장거리에 걸쳐 이동하는 大氣汚染이 산림의 훼손, 오존층의 파괴, 사막화, 지구의 溫暖化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특히 부각되어 특별한 연구와 행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大氣汚染이 地球生態系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게 되자 국제적 차원에서 타국과의 협력하여 지구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가 절실히 요구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이 필수적이게 되었다. 또한 자연자원의 관리가 환경문제 해결의 지름길인데 이러한 관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독을 받아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필요하다. 環境保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력구조의 연속성이 필요한데 이것은 오직 상설적인 기구만이 담당할 수 있다. 제도적인 常設性은 국제환경법의 발달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國際的 標準의 실정과 준수가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규칙의 적용을 감독할 장치들이 요구된다. 國際的 標準의 發效만으로 문제의 해결을 가져 올 수는 없다. 環境狀態와 環境에 관한 지식의 변화는 규칙의 지속적인 수정과 기존 국제조약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기능은 국제적 제도가 수행할 수 있다.<sup>1)</sup>

## 1. UN機構

UN이 지구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68년부터였다. 경제사회이사회의 제의로 총회는 同年 결의 제2398호(XXIII)로 1972년 人間環境會議을

1) Alexandre C. Kiss and Dinah Shelt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London : Graham and Trotman, 1991), pp. 55-56.

Stockholm에서 개최할 것을 권고하였다. 총회는 Stockholm會議의 권고에 따라 1972년 UN環境計劃(UN Environment Program)의 설립을 결의하였다. 그 이후부터 環境保全問題는 경제사회이사회와 총회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토의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 와서 UN의 각 기관은 環境保全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地球生態系의 보호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UN은 1992년 6월, 리우環境開發會議를 개최하고 리우宣言과 議題21을 위시한 여러가지 문서를 채택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 (1) UN環境計劃(U.N.E.P.)

UNEP는 UN의 보조기관으로서 1972년 Stockholm人間環境會議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 의하여 1972년 12월 15일 설립이 결의되었다. 이 기구의 목적은 환경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환경오염에 관한 지식을 함양하고 세계의 환경상태를 파악하여 각국에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있다. UNEP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모든 관련 UN기관들의 환경보전활동을 조정하고 각국 정부, 과학 및 경제단체, 비정부간기구 등과 환경문제에 관하여 긴밀히 협력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UNEP는 58개국으로 구성되는 執行理事會(Governing Council)를 가지고 있어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總裁(Executive Director)가 대표하는 事務局(Secretariat)은 환경문제를 조정하는 중심기관으로서 Kenya의 Nairobi에 위치하고 있다. UNEP의 環境基金(Environment Fund)은 환경보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기금을 가지고 여러 환경보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UNEP는 약 2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고 年間 예산은 약 4000만弗에 달하고 있다.<sup>2)</sup>

UNEP는 매년 “環境狀態”(State of the Environment)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인구의 증가, 도시화, 및 공업화가 세계의 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諸般 環境問題를 분석하고 있다. 1982년에는 Stockholm회의가

2) U. N., *Basic Facts about the U. N.* (New York : U. N., 1989), p. 112 ; U. N., *Everyónes U. N.*, 10th ed., (New York : U. N., 1986), p. 240.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진전되었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 보고 세계환경추세를 평가하는 종합적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매 5년마다 새롭게 추가·보충하게 되어 있다.<sup>3)</sup>

대체로 UNEP의 활동영역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여섯가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①人間定着(Human Settlements), ②인간과 환경건강, ③生態體系(Ecosystems), ④해양, ⑤환경과 개발, 그리고 ⑥자연재앙 이다. UNEP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環境評價, 環境管理, 그리고 지원조치이다.<sup>4)</sup>

UNEP의 사업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地球監視”(Earthwatch)이다. 이것은 관련된 환경문제를 가려내고 효과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 정보교환, 감시 및 자료조사를 포함한다. “地球監視體制”의 3개 구성분자는 世界環境監視體制(Global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 GEMS), 國際問議処(International Referral Service : IRS), 및 國際有毒化學物質目錄(International Register of Potentially Toxic Chemicals : IRPTC)이다.

GEMS는 기후나 보건 등과 같은 環境變數들을 관측, 측정, 해석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GEMS는 기후와 대기, 해양, 지구자원, 장거리 대기오염, 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의 중요분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8만가지를 초과하고 있다. IRPTC를 통하여 UNEP는 화학물질의 안전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IRPTC는 독자적인 자료은행을 발족시키고 자체 화학정보체제를 설립하도록 10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다. UNEP는 또한 안전과 오염규제분야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UNEP는 또한 국제환경정보체제(INFOTERRA)라고 불리는 세계자료망을 운용하고 있다. 이 INFOTERRA는 약 6000개 기구와 전문가들과 협력관계를 수립하여 이들로 부터 입수한 자료들을 각국 정부, 산업계 및 연구기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sup>5)</sup>

3) U. N., *Everyone U. N.*, p. 240.

4) *Ibid.*, pp. 240-241.

5) U. N., *Basic Facts*, p. 113.

UNEP는 또한 地域海洋計劃(Regional Seas Program)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최선의 해양 환경관리를 위해 실천계획을 立案하고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조약을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UNEP는 최근 水資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채택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sup>6)</sup>

UNEP는 世界氣象機構(WMO) 및 각국정부와 공동으로 지구의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조치를 추진하여 왔다.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을 설립하고 1992년 2월까지 모두 7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였다. 1990년 11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기후협약의 제정에 합의한 후 수차에 걸친 회의 끝에 1992년 5월 9일 UN 氣候變化協約案을 채택하였다. UNEP는 또한 다른 UN기관과 비정부간기구와 공동으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열대 삼림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실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2년 리우環境開發會議는 이른바 “森林原則”(Principles for a Global Consensus on the Management,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All Types of Forests)을 채택하는데 성공하였다.

UNEP는 沙漠化(desertification)의 방지를 위한 활동에도 종사하고 있다. 1978년 Nairobi에서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이 문제의 심각성에 관하여 심층있는 토의가 있었다. 사막화에 의한 지구의 폐허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 문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 때문에 人口學, 산림의 벌채, 에너지源, 水資源 등 여러가지 요소의 고려를 필요로 한다. 국제적·지역적 수준에서 권장되고 있는 조치들은 주로 기술적·경제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계획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과 조정이 필수적이다.<sup>7)</sup>

UNEP는 國際環境法の 발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國家責任과 損害賠償에 관한 국제법을 정립하려는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하였으나 人爲的 기후변화에 관한 指針(guidelines)을 마련하는데는 성공하였다.

6) *Ibid.*

7) A. Kiss and D. Shelton, *op. cit.*, pp. 61-62.

UNEP의 후원하에 환경법에 관한 전문가 그룹은 深海底 深査와 開發時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고 42개의 원칙을 공식화하였다. 비록 각국의 정식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 원칙들은 법적 가치가 있어 각국의 국내입법을 촉진하였다.<sup>8)</sup>

UNEP는 지금까지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UNEP의 주도하에 1985년 “오존층의 보호를 위한 Vienna협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오존층파괴 물질에 관한 Montreal 議定書”가 1987년 채택되었다. 또한 UNEP는 有害廢棄物의 규제와 관리를 위하여 1989년 “有害廢棄物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의 규제를 위한 Basel협약”을 채택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UNEP는 이밖에도 환경교육, 훈련, 지식의 보급 등과 같은 보조활동을 하고 있고 總裁의 年次報告書 이외에 매년 세계환경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sup>9)</sup>

1973년 설립된 후 UNEP는 지구의 環境汚染을 경감시키고 地球生態系를 보호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UNEP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각 UN기관들의 환경보전활동을 조정하고 각국 정부 및 기타 단체들과의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할 뿐 각국을 법적으로 구속할수 있는 결정을 내리거나 국제환경법규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地球生態系를 보호하기 위한 UNEP의 기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UNEP의 地位 格上과 기능 강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2) UN國際法委員會(I.L.C.)

1947년 총회에 의하여 설립된 國際法委員會(International Law Commission : ILC)는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과 法典化를 그 활동목표로 한다. ILC는 국제법의 여러 문제에 관한 조약초안을 준비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1949년 활동을 개시한 이래 ILC는 많은 조약초안을 작성하여 다수 多者條約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8) *Ibid.*, p. 62.

9) *Ibid.*, pp. 62-63.

ILC는 설립초기부터 國際環境法の 점진적 발달과 법전화에 관여한 것은 아니었다. ILC가 環境保全問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71년 부터였다. 1971년 ILC는 처음으로 國際水路의 非航行的 使用에 관한 국제법분야를 ILC의 法典化事業의 하나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1978년에는 “國際法이 금지하지 않는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國際責任”(International Liability for Injurious Consequences Arising out of Acts not Prohibited by International Law)문제를 ILC의 토의 과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ILC의 의제에 오르게 된 다수의 논제는 國際環境法과 직접 관련이 있다. 國家責任, 平和와 人類의 安全에 반한 罪, 國際水路의 非航行的 使用, 그리고 國際法이 금지하지 않는 행위로 인한 國際責任에 관한 ILC의 法典化作業은 國際環境法の 점진적 발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ILC는 1971년 “國際水路의 非航行的 使用에 관한 法”(Law of the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분야를 法典化事業의 일부로 포함시켰다. 이 논제는 동일한 국제하천의 경쟁적인 사용에서 야기되는 국가간의 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관한 것이다. 이 주제의 특별보고자(Special Rapporteur)인 Norway의 Evensen장관은 委員會의 1983년 會期에 그의 첫번째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국제조약초안의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條文案들이 포함되어었는데 모두 6개의 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sup>10)</sup> 그의 국제수로에 관한 조약 초안은 1984년 다소 수정되었다.<sup>11)</sup> 1991년 會期에 ILC는 새로히 다섯 條文을 채택하여 도합 32個條로 구성되는 조약초안을 완성하였다.<sup>12)</sup>

ILC는 1978년부터 “국제법이 금지하지 않는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제 책임” 논제를 토의하기 시작하였다. 최초에는 이 논제가 核活動과 같은 합법적인

10) Stephen C. McCaffrey, “The Wor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Relating to the Environment”, *Ecology Law Quarterly* 189, 192-193 (1983).

11) McCaffrey, “An Update on the Contributions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t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15 *Environmental Law* 667, 670-674(1985).

12) McCaffrey, “Current Developments : The Forty-Third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85 *A. J. I. L.* 793, 705-706(1991).



광범위한 활동으로 인한 책임에 관련된 것으로 보았으나 1983년에 국경을 넘어서 타국에 피해를 주는 자연활동(physical activities)에 국한되는 것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특별보고자인 Quentin-Baxter교수는 1982년 제출된 그의 제3차 보고서에 8個條로 구성된 “概要”(“Schematic Outline”)를 삽입하였다. 1983년 제출된 제4차 보고서에서 그는 주제의 범위를 전적으로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자연활동”(Physical activities, giving rise to physical transboundary harm)에 국한시켰다.<sup>13)</sup> 1984년 그가 서거한 후 委員會는 1985년 회기에 Julio Barboza대사를 특별보고자로 임명하였다. Barboza대사는 1990년 그의 제6차 보고서에 “國際責任”주제에 관한 33개 조문을 수록하였는데 이 조문들은 ILC의 1990년 회기에서 토의되었다.<sup>14)</sup> 그는 1991년 새로운 조문을 하나도 제출하지 않아 이 주제에 관한 ILC의 노력은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1978년부터 심의를 시작한 이래 ILC는 한 조문도 채택하지 못하였고 이 주제의 정확한 범위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것을 보면 이 주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알 수 있다.<sup>15)</sup>

ILC는 이상에서 말한 두가지 논제 이외에도 국제환경법과 관련이 있는 “國家責任”과 “平和와 人類의 安全에 대한 罪”에 관한 法典化作業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ILC가 준비하여 최종채택을 기다리고 있는 “平和와 人類의 安全에 대한 罪에 관한 法典案”(Draft Code of Crim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이 환경에 대하여 고의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행위가 人道에 반한 罪를 구성한다고 규정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47년 총회에 의하여 설립된 ILC는 국제환경법의 점진적 발달과 법전화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ILC가 지금 심의중인 국제환경법에 관한 조약초안들은 아직 완성되어 조약으로 정식 채택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ILC에 의하여 채택된 조문들은 관습국제법을 구성하며 국제환경법분야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는

13) McCaffrey, *supra* note 10, pp. 206-211.

14) Alfred Rest, “Ecological Damage in Public International Law,” *Environmental Policy and Law*, 22/1 (1992), p. 36.

15) McCaffrey, *supra* note 12, pp. 707-708.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

### (3) 國際原子力機構(I.A.E.A.)

1957년에 발족된 國際原子力機構(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IAEA)는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확보하고 세계평화, 인류의 건강과 번영을 위하여 원자력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고 확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IAEA는 핵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한 기준을 확립하고, 기술협력을 통하여 가맹국을 원조하며, 핵에너지에 관한 과학·기술정보의 교환을 촉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IAEA는 핵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핵안전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방사성 물질의 안전한 수송을 포함한 특정한 작업의 수행중 요구되는 안전규칙을 제정한다. 또한 핵사고의 경우 가맹국에 대하여 긴급원조를 제공한다.<sup>16)</sup>

1961년 IAEA는 방사성 물질의 운반에 관한 규칙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후에 여러번 수정되었다. 1984년에는 핵사고의 경우 가맹국간의 상호긴급원조를 위한 협정체결에 관한 指針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단순한 권고로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이 지침을 모든 핵생산국들은 제대로 존중하지 않았다. 실제로 단 하나의 협정만이 체결되었는데 1963년 10월 조인된 이 협정은 핵사고의 경우 北歐諸國간의 상호원조를 규정하고 있다.<sup>17)</sup>

1986년 4월 26일 旧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비단 이 지역뿐 아니라 많은 유럽국가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이 사건은 핵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케 하였고 IAEA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 주게 되었다. 이 사건의 영향을 조사하라는 요구가 IAEA에 쇄도하게 되었고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하여 국제적 기준을 정할 체제를 마련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그리하여 10개 국제기구의 대표와 62개 가맹국으로 부터 파견된 전문가 그룹이 1986년 Vienna에 회동하여 두개의 협약안을 마련하였다. IAEA 총회는 1986년 9월 26일 “핵사고 또는 방사성 긴급사태의 경우 원조에 관한 협약”(Convention

16) U. N., *Basic Facts*, p. 185.

17) IAEA Doc. INFCIRC/310, A. Kiss and D. Shelton, *op. cit.*, p. 68에서 재인용.

on Assistance in the Case of a Nuclear Accident or Radiological Emergency)과 “핵사고의 早期通告에 관한 協약”(Convention on Early Notification of a Nuclear Accident)을 채택하였다. 이 두 協약은 한달내에 필요한 基準을 얻어 즉시 발효하였다.<sup>18)</sup>

#### (4) 國際勞動機構(I.L.O.)

1919년 Versailles강화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國際勞動機構(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ILO)는 1946년 UN의 專門機關으로 편입되었다. 이 기관의 목적은 노동조건 개선, 생활수준의 향상, 근로자의 이익보호를 도모하는데 있다.

ILO는 특히 근로환경의 개선을 그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다. 1919년부터 ILO는 기준설정활동(standard-setting activities)을 통하여 이 분야에 그 활동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직업안전과 보건분야의 ILO사업의 일환으로 1977년에는 “직업상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148협약”(Convention 148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Workers Against Occupational Hazards in the Working Environment due to Air Pollution, Noise, and Vibration)과 권고 제156호를 채택하였고 1988년 6월에는 “건설직업상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167협약”과 권고 제175호를 제정하였다. ILO는 또한 1989년에 토착민에 관한 協약, 그리고 1990년에 작업장의 화학물질에 관한 協약을 각각 채택하였는데 이 두 協약은 환경보전과 직접 관계가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sup>19)</sup> 그 밖에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1960년의 “이온화 방사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115협약”(Convention 115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Workers Against Ionising Radiations), 1971년의 “벤젠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136협약”(Convention 136 Concerning Protection Against Hazards of Poisoning Arising from Benzene), 그리고 1974년의 “발암물질에 의한 직업상 재해의 방지와 규제에 관한 제139협약”(Convention 139 Concerning Prevention and Control of Occupational Hazards Caused by Carcinogenic Substances and Agents) 등 이다.

18) A. Kiss and D. Shelton, *Ibid.*

19) *Ibid.*, p. 69.

기준설정활동 이외에 ILO는 직업상 사고와 질병을 줄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지역적 및 국내적 수준에서의 노력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근로조건·환경部내의 직업안전·보건課는 대형재해 방지 法典案을 준비하고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에 관한 훈련편람을 제작하고 관련정보의 전파를 담당한다. UNEP, WHO, 및 IAEA와의 기구간 협력체제는 화학물질과 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보호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화학물질의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고 화학안전분야에 있어서 각국의 안전도모능력을 강화하며 화학물질의 검사방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1979년 발족한 “化學安全을 위한 國際計劃”(International Program on Chemical Safety)을 추진하고 있다. 1976년 ILO는 “근로조건과 환경의 개선을 위한 國際計劃”(International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and Environment)을 수립하였는데 이것은 UNDP와 기타 기부자들의 재정지원하에 직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책을 각국이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원조하는 기술협력체제를 확립하였다. ILO는 아시아에서 주요 재해통제체제를 확립하고 운용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포함한 20여개의 프로젝트를 개발도상국에서 진행시키고 있다.<sup>20)</sup>

#### (5) 食糧農業機構(F.A.O.)

1945년 채택된 憲章에 의거하여 설립된 食糧農業機構(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 FAO)는 영양수준의 향상, 농산물의 생산·판매·분배의 개선 및 농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기아의 퇴치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FAO는 자연자원의 보전을 그 목적으로 하는 UN의 전문기관으로서 지구환경보전을 그 주목적으로 하는 기구는 아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환경보전사업에도 종사하고 있다. 1973년 FAO총회는 FAO의 환경보전활동을 개발하고 조정할 기초로서 “식량과 농업을 위한 자연자원”(Natural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이라는 계획을 채택하였다. 1977년에는 UNEP와의 협력을 위하여 상세한 諒解 覺書(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UNEP와 체결하였다. 이것이 양기관이

20) *Ibid.*, pp. 69-70.

공동으로 추진하는 환경보전사업의 법적 기초가 되었다. 1981년 10월에는 “세계토양헌장”(World Soil Charter)이라고 불리우는 선언을 선포하였다.

FAO는 1969년 UN내에 설치된 “자연자원과 인간환경에 관한 部署間 작업그룹”(Interdepartmental Working Group on Natural Resources and the Human Environment)에 참가하고 있다. 또한 지중해의 오염방지를 위한 Barcelona협약과 의정서와 같은 환경관계 국제협약을 초안하는데 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FAO는 환경보전, 자연자원, 수질오염규제등의 분야의 국내입법을 立案하는데 있어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해 주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FAO는 예컨대 水資源法, 어업법규, 농업발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분야의 국내 및 국제입법을 수록한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sup>21)</sup> 또한 世界保健機構와 공동으로 Codex Alimentarius위원회를 운용하고 식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국제적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FAO는 이 밖에 농약규제를 위한 模範法案(model law)을 제정하고 농약의 부작용에 관한 자료도 수집하고 있다.

#### (6) 教育科學文化機構(UNESCO)

1946년 설립된 UN教育科學文化機構(U.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UNESCO)는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하여 각국간의 협조를 증진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문제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는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지구생태문제에 관한 세계여론의 영향을 받아 UNESCO는 1970년 “人間과 生態圈事業”(Man and Biosphere Program : M.A.B.)을 시작하고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연관성을 연구하는 임무를 위임받았다. 인간활동이 환경의 여러 부문에 미치는 영향, 자연계의 보존, 자연계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 등 14개의 주제가 이 사업에서 연구되었다. 현재 110개국 이상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sup>22)</sup>

UNESCO는 “國際的 重要性이 있는 濕地에 관한 協約”(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과 “世界 文化 및 自然遺產의 保護를 위한 協約”

21) *Ibid.*, p. 65.

22) *Ibid.*, p. 64.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이라고 불리우는 두 주요 국제협약을 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1990년 7월 현재 112개 당사국이 312개 품목을 “世界遺産”(World Heritage) 목록에 포함시켰다. 그밖에도 UNESCO는 국제환경교육계획(IEEP),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그리고 국제수문학계획(IHP)을 통하여 환경분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 (7) 世界保健機構(W.H.O.)

1948년 설립된 世界保健機構(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는 인류의 보건향상을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WHO는 환경의 재해와 악영향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환경보전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이 기구는 식품안전사업을 통하여 유해한 식품으로부터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환경건강에 대한 危害를 통제하기 위한 각국의 국내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가맹국에 대해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sup>23)</sup>

WHO는 보건기준을 정하는 이외에 “國際保健立法大全”(International Digest of Health Legislation)의 발간을 통하여 보건관계 정보를 수집, 전파하고 있다. 1989년 12월 8일 개최된 지역 보건환경장관회의는 WHO의 주도하에 “環境과 保健에 관한 유럽憲章”(European Charter on the Environment and Health)을 채택하였다. 이 헌장은 모든 개인은 고도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할 의무도 있음을 선언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汚染者負擔 原則”(Polluter-pays Principle)을 채택하여 환경보전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였다.

WHO는 환경과 보건에 관하여 여러가지 권고문과 지침을 발표하였다. 예를들면 국가환경보건계획(1970년), 인간환경의 보건상 위험(1972년), 환경오염규제의 보건상 측면(1974년), 보건과 환경(1977년), 환경보건영향평가(1979년), 개발에

23) *Ibid.*, p. 66.

관련된 환경오염규제(1985년)등에 관하여 권고문과 지침을 채택·공포하였다.<sup>24)</sup>

(8) 世界氣象機構(W.M.O.)

1950년 발효한 세계기상협약에 의거하여 1951년부터 활동을 개시한 世界氣象機構(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 WMO)는 세계기상활동의 조정, 표준화 및 증진과 국가간의 기상정보의 효율적인 교환을 촉진하기 위함은 그 임무로 하고 있다. WMO는 “世界氣候監視”(World Weather Watch)體制를 수립하고 지상관측소, 기상위성, 상업용 항공기, 선박등으로 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하여 지상 및 대기관측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1969년에는 여러 大氣汚染源을 지역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범세계적으로 大氣汚染度를 측정하여 기상자료를 표준화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대기오염에 의한 기후의 변화가능성과 대기오염에 의한 해양환경의 오염에 관한 연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sup>25)</sup>

WMO의 “氣象學的 適用과 環境計劃”(Meteorological Application and Environment Programme)은 기상학적 지식을 농업, 에너지, 대기와 해양오염과 같은 인간활동과 환경문제 일반에 응용하고 있다. 1979년 Geneva에서 개최된 世界氣候會議가 채택한 “世界氣候計劃”(World Climate Programme)은 기후의 자연적 변화에 관한 지식을 함양하고 자연적 원인이나 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관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sup>26)</sup>

WMO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문제에 관하여 유권적인 과학적 지식을 제공하는 UN의 공식기관이다. 1989년에 “世界大氣監視”(World Atmosphere Watch)체제를 확립하고 온실가스의 대기중 농도변화, 오존층의 변화 및 산성비의 존재 여부를 탐지할 조기경보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이 기구는 특히 오존층의 보호와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의 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UNEP와 공동으로

24) Werner Bischof, “Survey of International Legislation for the Practice of Environmental Biotechnology”, in H.-J. Rehm and G. Reed(eds.), *Biotechnology*, Vol. 8 (1986), p. 678.

25) David A. Davis, “The Role of the WMO in Environmental Issues”, 26 *International Organization*, 329-336(1972).

26) U. N., *Everyones U. N.*, pp. 422-42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을 1988년 설립하고 기후변화협약협상을 진행시킨 결과 1992년 5월 “UN기후변화기본협약안”(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채택하도록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 (9) 國際海事機構(I.M.O.)

1958년 발효된 協約에 의하여 설립된 政府間海事協議機構(IMCO)의 후신인 國際海事機構(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MO)는 국제해운의 규제, 해상안전 및 해양오염의 방지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IMO는 특히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국제협약과 규약 및 권고를 기초하였는데 이들은 가맹국들이 채택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다. IMO의 주도로 체결된 국제협약의 예로는 1954년의 油類汚染防止協約, 1969년의 公法協約 및 私法協約, 1972년의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협약, 1973년의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협약이다. IMO는 1973년 海洋環境保全委員會(Maritim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를 설치하였는데 이 기관은 IMO의 주관하에 체결된 오염방지협약의 집행과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한 활동의 조정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UN내의 다른 기관들도 종종 환경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예컨대 國際民間航空機構(I.C.A.O.)는 항공기 소음과 배출 가스에 관한 국제기준을 정하여 각국이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世界銀行(I.B.R.D.)도 본부와 지역사무소에 환경부서를 두고 사막화와 산림훼손의 방지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UN開發計劃(U.N.D.P.)은 환경분야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1992년 2월 Colombia에서 개최된 UNCTAD총회에서는 무역과 환경의 연계문제 및 오염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보고서도 발표된바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UN의 여러 기관들은 지구의 생태계를 오염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구환경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UN체제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안보이사회의 같은 수준의 “環境保護理事會”(Environmental Protection Council)를 설치하자는 1989년의 New Zealand제안은 채택되지 못하였고 1992년 6월에 개최된 리우



環境開發會議는 “持續開發委員會”(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설치할 것에 합의한데 그쳤다. 지구의 생태계 보호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기득권 보호를 우선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UN체제의 개편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 2. 非政府間 機構

### 1) 國際自然保存聯盟(IUCN)

1988년 世界保存聯盟(World Conservation Union)으로 改名한 國際自然保存聯盟(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은 1948년 프랑스 정부의 주도로 설립된 비정부간 기구로서 자연보호단체, 국가 및 공공단체들로 구성된 특이한 기구이다. 이 기구의 목적은 생물자원 보존조치의 장려, 생물자원 현황의 평가, 환경교육, 및 환경정보의 공급 등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UCN은 자원보전, 정보수집과 분석 및 유통에 관하여 가맹국정부 및 단체들과 협의하며 각국정부에 제의할 보존조치를 채택한다. 또한 자원보전에 관한 국제조약의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며 보존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를 장려한다.<sup>27)</sup>

IUCN은 1980년 3월 “世界保存戰略”(World Conservation Strategy)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각국정부에 대하여 야생 동식물의 보존을 그들의 개발정책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개발정책이 생물자원의 보존에 기초하지 않는 한 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는 가정하에 지구생태계의 보존과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강조하고 있다. IUCN은 “赤色資料集”(Red Data Books)을 발간하고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의 목록을 매년 발표하여 이들을 보호하도록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IUCN은 자연자원 보전에 관한 주요 국제협약을 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여컨데 1968년의 “自然 및 自然資源의 保存에 관한 Africa 協約”(African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27) A. Kiss and D. Shelton, *op. cit.*, p. 70.

1973년의 “滅種危機에 있는 野生 動植物의 國際去來에 관한 協約”(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1979년의 “移住性 야생동물 보존을 위한 Bonn협약”(Bonn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Migratory Species of Wild Animals), 1992년의 “生物多樣性 協約”(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을 기초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1982년 UN총회가 채택한 世界自然憲章(World Charter for Nature)의 제1초안을 작성한 것도 IUCN이었다.

## 2) 世界自然基金(W. W. F.)

1961년 정식으로 발족한 世界自然基金(Worldwide Fund for Nature : WWF)의 목적은 야생동식물과 자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기금을 모집, 관리 그리고 분배하는 것이다.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기구는 IUCN과 제휴하여 범세계적으로 환경보전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그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다.

이 기구는 매년 IUCN과 공동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자연보존사업에 관한 결정을 공동으로 내린다. 1991년에 UNEP, IUCN과 더불어 新世界保存戰略을 제창하였고 1973년의 Washington협약(CITES), 1979년의 Bonn협약, 1971년의 “물새 棲息地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濕地에 관한 Ramsar協約”(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등의 시행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의 두 기구 이외에도 암스텔담에 본부가 있는 Greenpeace, 제3세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3세계 네트워크(Third World Network), 여성의 입장에서 환경문제를 다루는 여성환경개발기구(W.E.D.O.) 등이 있다.

### III. 地域的 機構

#### 1. 유럽機構

##### 1) UN 유럽經濟委員會(UN ECE)

유럽經濟委員會(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 E. C. E.)는 1947년

UN經濟社會理事會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경제위원회로서 동서진영이 다 같이 여기에 참가하고 있다. ECE는 유럽 전역의 전반적인 경제발달을 그 임무로 하고 있으나 1956년부터 환경문제도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同年 이 기구는 항행에 이용되는 國際水路의 수질오염문제를 논의할 교통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963년에는 석탄공장에 의한 대기오염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석탄생산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68년에는 水資源問題위원회가 발족하였고 1969년 ECE는 환경분야에 있어서 정부간 협력도모를 4개 주요 목표중의 하나로 삼을 것을 결정하였다.<sup>28)</sup>

ECE는 1971년 전적으로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보조기관을 설립하였다. “環境問題 先任顧問官團”(Senior Advisers to ECE Governments on Environmental Problems)이라고 불리우는 이 기관은 유럽諸國의 환경상태를 조사·평가하고, 환경정책 및 제도와 국내입법을 분석하여 환경정책의 국제적 의미를 연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대기오염과 水資源의 이용 및 수질오염에 관한 작업그룹들은 고문단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CE는 환경관련 국제협약을 다수 기초함으로써 국제환경법 발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58년 이미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였고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有害상품의 국제적 육로수송을 규제하는 규칙을 제정하였다. 1979년 “국경을 횡단하는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의 체결은 ECE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1990년에는 “內陸水路의 우발적 오염에 관한 행동규약”(Code of Conduct on Accidental Pollution of Transboundary Inland Waters)을 채택하는데 성공하였다. ECE는 현재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a Transboundary Context)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책임에 관한 指針案”(Draft Guidelines on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Regarding Transboundary Water Pollution)을 심의하고 있어 머지않은 장래에 결실이 맺어질 것이 기대된다.

28) *Ibid.*, pp. 74-75.

## 2) 유럽審議會(Council of Europe)

1949년 창설된 유럽審議會(Council of Europe)는 가맹국의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며 경제·사회·문화·과학·법률·행정사항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거나 공동행동을 추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이 기구의 關係委員會와 議院總會(Parliamentary Assembly)는 이미 1960년대부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어왔다. 그러나 가맹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결정을 채택할 권한은 없고 권고의 형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불과하다. 그러므로 유럽共同體(E. C.)에 비해 그 실효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유럽審議會는 환경문제에 관한 여러 협약과 협정을 기초하였고 선언과 권고문도 채택하였다. 1968년과 1974년 사이에 유럽 水憲章(European Water Charter, 1968), 대기오염규제에 관한 원칙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 on Air Pollution Control, 1968), 자연보존에 관한 유럽선언(European Declaration regarding Conservation of Nature, 1970), 유럽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Management of the Natural Environment in Europe, 1970), 토양헌장(Soil Charter, 1972) 등을 채택하였다.

유럽審議會는 또한 國際水路의 보호를 위한 협약안을 준비하였으나 각료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되지 못하였다. 유럽경제공동체(E. E. C.)가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 후부터 유럽審議會는 환경보전활동보다는 자연보호, 환경정보의 제공 및 환경교육, 환경보전 협력증진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sup>29)</sup>

유럽審議會는 국제입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기구의 주도로 체결된 국제협약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1968년 서명된 “세척제의 사용제한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Agreement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Detergents in Washing and Cleaning Products), “국제수송중 동물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during International Transport), “유럽 야생동물과 자연서식처의 보전에 관한 Bonn협약”(Bonn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European Wildlife and Natural Habitats, 1979) 등이다.

29) *Ibid.*, p. 76.

## 3)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Marshall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OEEC를 개조하여 1960년 성립된 經濟協力開發機構(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는 가맹국의 경제성장, 고용 및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가맹국 및 비가맹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하여 세계무역확대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OECD는 가맹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가맹국에 대한 “권고”는 구속력은 없으나 그 채택에 찬성한 국가의 의사와 일반적 견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권위가 있다.

1970년 OECD는 환경에 관련된 20여개 위원회의 업무를 통합하여 환경위원회를 설치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sup>30)</sup> OECD는 특히 국제환경법의 발달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OECD가 채택한 一連의 결의안, 원칙선언 및 권고는 국제환경법을 형성하는 “Soft Law”로서 관습법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처음으로 “환경오염”의 법적 정의를 제시하였고 국경횡단 오염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환경기준을 정하였다. 또한 통고 및 협의 의무, 긴급상황의 통지 의무, 내국인과 외국인의 當事者能力上 평등의 원칙, 재판법규 적용상 非差別의 원칙, 오염자 부담의 원칙과 같은 기본적 국제환경법 규범의 형성에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기 및 수질오염에 관한 상세한 규칙을 제정하였고 有毒 위험폐기물과 화학물질의 규제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1988년에는 제3세계 국가에 특히 관계가 있는 “위험폐기물의 국경이동에 관한 결정”(Decision on the Transfrontier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을 채택하였다.<sup>31)</sup>

주로 경제협력문제를 다루는 OECD가 이와같이 환경보전문제에 많은 관심을

30) 예컨대 OECD는 “국경횡단오염문제”(Problems of Transfrontier Pollution, 1974), “국경횡단 오염의 법적 측면”(Legal Aspects of Transfrontier Pollution, 1977),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보상”(Compensation for Pollution Damage, 1981), “국경횡단 오염과 국가의 기능”(Transfrontier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1985), “OECD와 환경”(OECD and the Environment, 1986)등의 연구총서를 발간하였다.

31) A. Kiss and D. Shelton, *op cit.*, p. 78.

기울이고 있는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 4) 유럽共同體(E.C.)

1957년 조인된 유럽 原子力共同體(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 EURATOM) 설립조약은 제3장에서 “건강보호”(Health Protection)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환경보전활동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石炭鋼鐵共同體(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 E.C.S.C.)를 설립한 1951년의 Paris조약과 유럽經濟共同體(European Economic Community : E.E.C.)를 설립한 1957년의 Roma조약은 환경보전에 관한 권한을 이 기구에 직접 부여하는 하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EC는 1970년대초부터 환경보전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EEC조약 제100조와 제235조가 EEC에게 환경보전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근거하에 환경보전에 관한 여러가지 실천계획, 指針, 권고 및 선언들을 채택하였다. 1972년 9개 EC가맹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은 Paris에 회합하여 비물질적 가치와 환경보전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삶의 質”(quality of life)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문은 환경정책의 개발을 요청하고 EC가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3년 11월 22일 EC이사회는 처음으로 환경에 관한 실천계획<sup>32)</sup>을 채택하였는데 1977년에 두번째 계획,<sup>33)</sup> 그리고 1983년에 세번째 계획<sup>34)</sup>을 차례로 내놓았다. 네번째 실천계획<sup>35)</sup>은 EC이사회에 의하여 1987년에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EC가맹국과 국민들을 구속하지 않는 단순한 입법·행정계획에 불과하다.

이상의 실천계획에 따라 EC는 규칙, 지침, 결정, 결의 및 권고의 형식으로 입법성격의 많은 법규를 채택하였다. 이들의 대부분은 指針으로서 비록 가맹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나 이행수단의 선택은 각국 정부에 일임하고 있다. 1970년

32) O. J. C. E. No. C. 112/1.

33) O. J. C. E. No. C. 139/1, 1977.

34) O. J. C. E. No. C. 46/1, 1983.

35) O. J. C. E. No. C. 282/1, 1987.

EEC이사회는 Roma조약 제100조에 근거하여 최초로 자동차 배기가스의 배출 허용기준을 정하는 지침을 채택하였다. 1972년에는 디젤엔진을 부착한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고 1975년 EC이사회는 액체연료의 유황성분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였다. 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의 규제를 위한 지침이 1984년 채택되었고 1985년에는 이산화질소의 배출을 제한하는 지침이 제정되었다.<sup>36)</sup>

1986년 2월 채택된 單一유럽協定(Single European Act)은 기존의 공동체 설립조약을 개정하고 특히 환경문제에 관한 공동체의 권한 유무를 둘러싼 종래의 논란을 완전히 해소시켰다. 이 협정에 환경보전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삽입하여 제100A조<sup>37)</sup> 제130R조, 제130S조, 제130T조<sup>38)</sup>를 신설하였다.

EC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자문위원회와 작업그룹을 운용하고 있다. 예컨대 1976년 위원회(Commission)의 결정에 따라 폐기물관리위원회가 설립되었고 1974년에는 근로자의 안전, 위생 및 건강에 관한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80년에는 탄화수소(hydrocarbons)에 의한 오염규제와 감축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78년에는 살충제에 관한 과학위원회가 설립되었다.<sup>39)</sup>

EC는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국제협약의 당사자이며 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EC는 오늘날 그 어느 국제기구보다 환경보전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5) 北歐理事會

北歐의 Denmark, Finland, Norway, Sweden, 그리고 Iceland 5개국은 北歐理事會(Nordic Council)를 통하여 北歐의 환경보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52년 설립된 이 기구는 일종의 자문기구로서 1973년에 환경

36) 拙著, “환경보전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대기오염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의 국어대학교 논문집 제23집(1990), p. 414.

37) 신설된 제100A조는 제100조를 보충하여 환경보전을 EC의 우선순위사업으로 인정하였다.

38) 제130R조, 제130S조 및 제130T조는 환경에 관한 EC의 행동원칙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39) W. Bischof, *op. cit.*, p. 686.

업무위원회를 설치하고 환경보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사회는 환경보전을 위한 北歐협력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정보의 교환과 공동연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sup>40)</sup>

北歐理事會는 1974년 “北歐환경보전협약”을 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총16개 조문과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는 이 협약은 환경보전을 위한 여러가지 실효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환경관련 국제조약의 한 모범이 되고 있다.

## 2. 非유럽機構

### 1) 南太平洋委員會

南太平洋委員會는 1947년 Australia, 프랑스, 네덜란드, New Zealand, 영국 그리고 미국에 의하여 설립되었다.<sup>41)</sup> 이 위원회는 협의·자문기관으로서 어업과 임업등에 관한 조치를 공식화하고 또한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래 이 기구는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6년 “남태평양의 자연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on Conservation of Nature in the South Pacific)과 “종합환경관리계획”을 채택하였다. 이 위원회의 제의로 UNEP와 공동으로 몇몇 그룹으로 구성된 조정기관이 1980년 사업을 시작하여 1982년 남태평양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자연자원과 환경에 관한 남태평양선언”, 자원관리를 위한 실천계획 그리고 이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 및 재정조치에 관한 협정을 채택하였다.<sup>42)</sup>

남태평양지역환경계획이라고 불리는 실천계획을 4년간 추진한 결과로 1986년 “남태평양지역의 자연자원과 환경의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40) Charles Phillips, “Nordic Co-oper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gainst Air Pollution and the Possibility of Transfrontier Private Litigation”, in Flinterman, Kwiatkowska and Lammers(eds.), *Transfrontier Air Pollution* (Dordrecht : Nijhoff, 1986), pp. 154-155.

41) 현재는 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42) A. Kiss and D. Shelton, *op. cit.*, . pp. 89-90.



Protec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of the South Pacific Region)<sup>43)</sup>과 두개의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2) 國際共同委員會(I.J.C.)

國際共同委員會(International Joint Commission : IJC)는 1909년의 境界水域條約(Boundary Waters Treaty)에 의하여 五大湖의 環境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美·加間에 설립된 兩者機構이다. IJC는 미국과 Canada가 각각 3명씩 임명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구는 댐공사와 같이 境界수역의 環境에 影響을 줄 수 있는 공사의 시행신청을 인가하는 기능과 양국이 제기하는 특정 문제나 사건에 대한 조사, 권고 또는 기타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양국이 채소하는 사건에 대하여 司法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으나 이 권한은 지금까지 실제로 행사된 예가 없다.<sup>44)</sup>

IJC는 美·加 양국의 環境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1966년에 國際大氣汚染諮問部를 설치하고 양국 국경의 대기오염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技術部를 설립하고 五大湖의 수질오염에 관하여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였다. 1969년 이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IJC는 수질 오염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였다.

IJC는 1972년과 1978년에 두 五大湖水質協定(Great Lakes Water Pollution Agreements)을 美·加間에 체결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72년 이 협정은 IJC에게 수질오염실태를 조사하고 오염방지를 위하여 권고를 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IJC는 구속력있는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실효성이 제한되고 있다.<sup>45)</sup> 근래에 와서 IJC는 대기오염문제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43) 26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38(1986).

44) Richard B. Bilder, "Controlling Great Lakes Pollution : A Study in United States-Canadian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John L. Hargrove (ed.), *Law, Institutions, and the Global Environment* (Dobbs Ferry, N. Y. : Oceana Publications, Inc., 1972), p. 303.

45) 拙著, "環境保護와 汚染防止를 위한 國際法에 관한 研究", 大韓國法律학회 논총 제51호 (1982), p. 132.

이상에서 지적한 지역적 기구들 이외에도 Rhine강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 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Rhine against Pollution),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美洲機構(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 OAS), 미국과 Mexico간의 국제 경계수역위원회(International Boundary and Water Commission)등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적 환경보전기구는 주로 西유럽과 北美에서 볼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별로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 新興工業國, 중국 및 아세안(ASEAN)諸國의 급속한 공업화와 더불어 이 지역의 환경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어 이 지역에도 국제환경보전기구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黃海의 해양오염과 중국에서 야기되는 장거리 越境 大氣汚染의 규제를 위하여 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간에 환경보전 협력기구의 창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UN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의 환경보전기능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IV. 結 論

인류의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그 목적달성이 어렵고 국가간의 협력과 국제기구에 의한 접근이 필요하다. 1960年代末부터 여러 국제기구들이 환경보전활동에 종사하기 시작하였고 오늘날 환경관련 국제협약의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구환경을 보호하는데 있어 국제기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구환경보전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는 UN이다. 특히 UN環境計劃은 환경보전활동을 전담하는 UN의 보조기관으로서 지구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UN國際法委員會는 국제환경법의 점진적 발달과 法典化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國際原子力機構(IAEA)는 핵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그 밖에 지구환경보전에 종사하고 있는 UN기구는 國際勞動機構, 食糧農業機構, UNESCO, 世界保健機構,

世界氣象機構, 國際海事機構, 國際民間航空機構, 世界銀行 등과 같은 專門機關이다. UN이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효과적인 환경보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UN체제의 개편과 UN의 기능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적 기구의 활동은 특히 西유럽과 北美에서 활발하다. 유럽의 대표적인 환경보전기구는 UN 유럽經濟委員會, 유럽審議會, OECD, 유럽共同體(EC), 北歐理事會 등이다. 미국과 Canada간의 國際共同委員會(IJC)도 유럽機構 못지 않게 환경보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 와서 아시아 新興工業國들의 급속한 공업화와 함께 이 지역의 生態系가 심히 파괴되고 있어 우리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특히 동북아지역에도 빠른 시일내에 환경보전 협력기구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